(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자 모집 공고

본 모집 공고를 통해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평택 가재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의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입회 희망자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 측정 개요

1. 위　　치 : 경기도 평택시 가재1로 15
2. 측정일정 : 2026년 10월 26일(월요일) ~ 2026년10월 28일(수요일)
3. 측정세대 : 법적 기준에 근거해 선정된 15개 세대
4. 입회일시 : 2026.10.26(월) 오후 1시~2시

● 모집 개요

1. 모집일정 : 2026년 10월06일(화요일)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2. 모집대상 : 입주예정자
3. 선발인원 및 방식 : 2~6명(최대), 선착순 마감
4. 참여방식 : 이메일(maroonis@ssyenc.com)로 아래 항목을 제출

※ 제출서류 : [첨부2] 입회신청서, 입주계약서 사본

● 문　　의

평택 가재지구 1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담당자

연락처 : 031-663-9941

운영시간 : 09:00 ~ 17:00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2. 15.>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신청서

① 입회 희망일 (년/월/일)	2026.10.26(월)			
신청인 정보	② 성명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근거법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제1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입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 더 플래티넘 쌍용건설(주) 귀하

첨부서류	입주계약서 사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측정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210㎜×297㎜[백상지 80g/㎡]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 안내사항

2026년 10월

GLOBAL SAE-A GROUP
쌍용건설

1. 목적

본 안내사항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환경부, 2024.01.)을 당사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입회자의 이해를 도와 실내공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2.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절차

실내공기질 측정 입회 절차는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구체적인 내용은 본 안내사항이 우선한다.

2-1. 일반사항

입회자는 시공자 및 측정자가 안내한 내용 및 가이드라인과 본 안내사항에 기술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그 외 측정과정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입회 측정 관련사항 사전 숙지

입회자는 실내공기질 입회 측정을 위해 입회의 목적, 주의사항, 안전수칙, 중점 점검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개인용품 휴대 금지

입회자는 개인이 소유한 실내환경측정기, 라돈 간이측정기 등의 측정기기류를 측정 현장에 지참할 수 없다.

다.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제한

실내공기 오염물질 측정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수 사용, 향이 강한 화장품 사용, 흡연 등은 입회 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하며, 입회 당일 입회를 마치는 시점까지는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계없는 사진 촬영 및 측정 현장에서 입회자의 단독 이동은 할 수 없다.

2-2. 입회자 확인사항

입회자는 입회 시 아래 항목과 같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측정 조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본 제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참여한다.

가. 세대 밀폐상태 확인

실내공기질 시료 채취 전 밀폐한 실내환경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외부 공기와 면하고 있는 창과 문이 모두 닫혀 있는지 점검한다.

나. 내부 인테리어 제품들의 개방상태 확인

붙박이장의 문, 방문의 문, 싱크대 문 등 내부 인테리어 제품들의 문들이 모두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다. 측정 장비의 위치 확인

시료 채취 장치 또는 측정기기가 거실 중앙에 위치하는지 확인한다.

2-3. 시공자 및 측정자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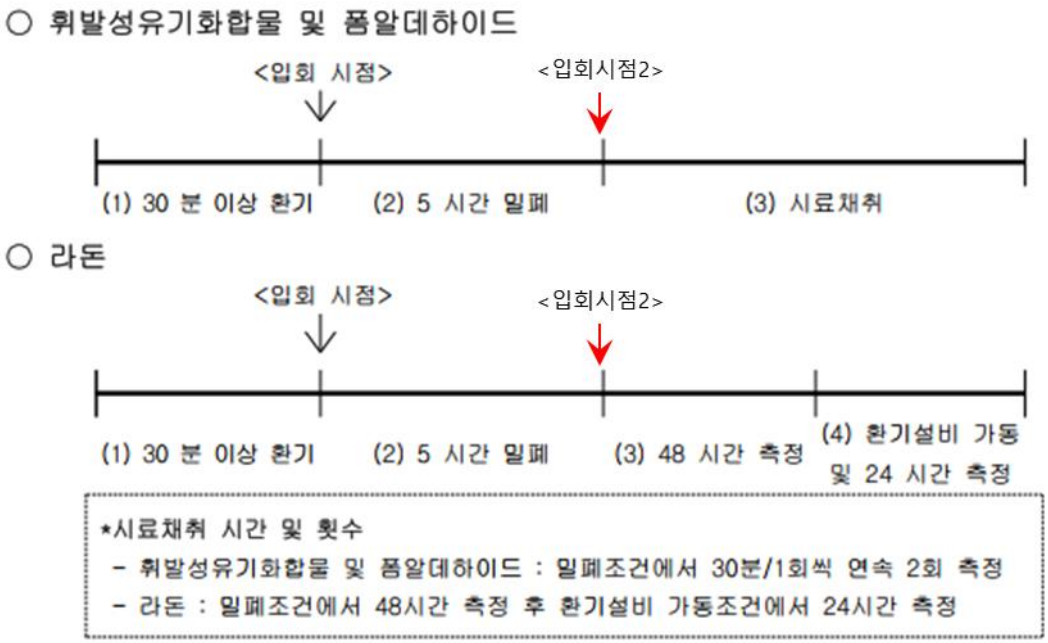
시공자 및 측정자는 실내공기질 측정시 아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입회자 확인

시공자는 입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정해진 입회 시점에서 측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입회자 입회 시점

입회자 입회 시점은 [그림 1]과 같이 밀폐 전, 시료채취를 시작할 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한 상태에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측정자가 입회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그림 1] 측정 세대 입회자 입회 가능 시점

다. 입회자 퇴실 시점

측정에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입회자는 측정 전에 현장에서 세대 밀폐상태 확인, 내부 인테리어 제품들의 개방상태 확인 또는 측정장비의 위치를 확인한 후 즉시 퇴실하여야 한다.

2-4. 기타 사항

가. 선정된 입회자 불참시

측정이 임박한 시점에 입회자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한 불참 의사를 표현한 경우 해당 입회자는 입회가 불가함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이메일, 문자 등으로 제출하고, 시공자는 타 입회자에게 대체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입회자의 측정 비협조 시

측정자는 입회자가 측정 결과, 측정 과정,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 사항을 시료채취부에 기록한 후 해당 입회자를 제외하고 측정할 수 있다. 해당 세대의 모든 입회자가 비협조 시 타 세대의 입회자를 대체하여 측정할 수 있다.

다. 입회 대상 세대의 측정환경 미조성 시

시공자 또는 입회자가 측정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측정자는 관련 사항을 시료채취기록부에 기록하고 필요시 시공사 및 입회자와 협의하여 타 세대로 대체하여 측정하는 등 실내공기질 측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그 외 측정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현장 정전, 기기 오류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여 측정자가 측정값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공자와 협의하여 재측정을 할 수 있다. 재측정은 당시 입회했던 동일 입회자 입회 하에 실시하고, 입회자가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입회 불가를 통보할 경우 시공자는 타 세대의 입회자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